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40
----------	-----

제출연월일 : 2019년 5월 2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가. 2017년 서울시교육청-(사)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업무협약에 근거한 위탁사업 추진
- 나. 2018년 하반기 시의회에 2019사업계획(민간위탁사업)으로 제출
- 다. (사)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국제적 네트워크 및 인력 활용을 통한 충실한 사업 운영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2019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2017년 서울시교육청-(사)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3회째 지원하는 사업임
 - ※ 업무협약 내용: 동아시아청소년역사체험캠프 운영
 - 매년 동아시아 3국(한,중,일)간 국제네트워크 및 인력을 활용한 협력으로 공동기획 및 공동운영해왔음(2002년 시작, 2019년 제18회 개최)
 - (사)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측 캠프 운영의 전문성 활용 필요
-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사업기획 및 운영
 - 대상자 선정 및 교육활동 전체
- 라. 민간위탁 기간: 2019.~9월
- 마. 수탁자 선정방식: 업무협약에 따라 수탁자 지정
- 바. 예산 규모: 금40,000천원(금사천만원)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업계획 (별첨 1)

나. 관계 법령

○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별첨 2)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별첨 3)

다.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민간 위탁 성과 보고서 (별첨 4)

【별첨 1】

국립민주시민교육원
형성미래교육

2019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운영 계획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자!
-동아시아의 화해와 핵 없는 세계로의 길



2019. 4.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I 목적

- 한·중·일 청소년들이 상대국 역사를 공부하고, 상대국 입장에서 자국의 역사를 생각해보는 교육의 장 마련
- 전쟁과 국가 폭력을 극복하고 인권·평화·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인식의 기회 제공
- 평화 지향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동아시아 청소년들의 교류의 경험 증진
- 21세기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들의 미래의 선도적 역할 모색

II 근거

- 동아시아 교사·청소년 국제교류 및 평화교육을 위한 협약(서울특별시교육청-아시아 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17.3.9.)

III 추진 방향

- 한·중·일 청소년들이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동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유적지 현장답사 및 조별 토론, 강연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동아시아 청소년 대화 및 협동 활동을 통한 평화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한·중·일 각국의 전통 문화 체험을 통한 청소년 상호 교류 기회 제공
- 동아시아 지역의 교사들 간 역사교육 대화를 통한 교사 교류 프로그램 마련

IV 세부 추진 계획

1. 행사 개요

- 주 제 :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자-동아시아의 화해와 핵 없는 세계로의 길」
- 일 시 : 2019.8.7.(수) ~ 2019.8.12.(월), 5박6일
- 장 소 : 도쿄 일대, 메이지 대학교 등
- 주 최 : 【한국】 서울특별시교육청,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일본】 제18회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실행위원회
【중국】 사회과학근현대사연구소, 중국 사회과학문헌출판사
- 주 관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 숙 소 : 도쿄 센트럴 유스호스텔
- 학생 참가비 : 1,100,000원 이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참가비 일부 지원
- 참여인원: 약 210명

대상	인원	한국	일본	중국
청소년	105명	35명(서울 18명)	35명	35명
관계자	105명	교사/관계자 15명	교사 및 스태프 75명	교사/관계자 15명

2. 프로그램

날짜	오전	오후	저녁
8/7 (수)	- 한국 팀 답사 진행	- 참가자 입국 - 참가자 접수	- 개회식 및 환영만찬 - 아이스브레이크
8/8 (목)	- 강연(1) ·당신도 제5 후쿠류마루에 타 보지 않았습니까?(아서 버나드)	- 답사(1) ·제5 후쿠류마루 전시관	- 조별활동(1) ·조별토론 ·조별 장기자랑 준비
8/9 (금)	- 강연(2) ·야스쿠니 문제와 전쟁 책임(다카하시 데쓰야_도쿄대학대학원 교수)	- 답사(2) ·야스쿠니 신사, 유슈관 ·해신기념관, WAM	- 조별활동(2) ·조별토론 ·조별 장기자랑 준비
8/10 (토)	- 공동수업 ·한국전쟁과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 조별 시티투어 ·5개조로 나뉘어 투어 - 조별 저녁식사	- 조별활동(3) ·장기자랑 준비
8/11 (일)	- 조별활동(4) ·조별토론 정리 및 발표	- 조별활동(5) ·장기자랑 준비	- 폐회식 - 장기자랑/오픈카페
8/12 (월)	- 해산 / 한국 팀 답사 진행 - 참가자 귀국	※ 상기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세부 일정

1) 사전교육

날짜	오전	장소
7/27(토)	-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등 진행	가재울 고등학교
8/3(토)	- 캠프 전반에 대한 이해, 조별활동 등	가재울 고등학교

2) 캠프

날짜	시간	내용
8/7 (수)	6:00	- 참가자 집결
	7:45-9:55	- 김포 출발 → 하네다 도착
	11:00~15:00	- 답사 ·YMCA아시아청소년센터, 재일한인박물관 등 3.1운동 유적지
	15:00~17:00	- 숙소 도착, 짐정리, 메이지대학 이동
	17:00~20:00	- 개회식 (메이지대학교)/아이스브레이킹
8/8 (목)	09:00-12:00	- 강연: 당신도 제5후쿠류마루에 타 보지 않겠습니까? (아서 버나드)
	12:00~13:00	- 점심
	13:00~17:00	- 답사(1): 제5후쿠류마루 전시관
	17:00~20:00	- 저녁식사 후 조별활동, 토론
8/9 (금)	09:00-11:00	- 강연 야스쿠니문제와 전쟁 책임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
	11:00~12:00	- 강연 : 답사장소 해설(야스쿠니 유슈관, 해신기념관, WAM 등)
		- 점심
	12:00~13:00	- 답사(2) ·야스쿠니 신사, 유슈관
	13:00~17:00	·해신기념관, WAM
17:00~20:00	- 저녁식사 후 조별활동, 토론	
8/10 (토)	09:00-12:00	- 한중일 공동수업 : 한국전쟁과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2:00~13:00	- 점심
	13:00~17:00	- 조별 시티투어(5개 코스)
	17:00~20:00	- 저녁식사 후 조별활동, 토론
8/11 (일)	09:00~17:00	- 조별활동: 장기자랑 준비, 식사 등
	17:00~20:00	- 폐회식, 장기자랑 발표 등
8/12 (월)	09:00~11:00	- 해산
	11:00~19:00	- 한국측 답사(3): 메이지신궁 등
	19:00~20:05	- 공항 자유시간, 저녁식사
	20:05~22:25	- 하네다 출발→인천공항 도착
	23:00~	- 해산

3) 강연 및 답사 세부 내용

◎ 8월 7일 수요일

- 1919년 2.8독립선언 장소였던 YMCA 아시아청소년센터, 재일한인박물관 등 3.1운동 관련 유적지 답사 예정.

◎ 8월 8일 목요일

- 강연 : 당신도 제5후쿠류마루에 타 보지 않았습니까?(아서 버나드)
 - 제5후쿠류마루를 중심으로 핵 피해의 실상, 미국의 핵실험 등의 영상 소개
 - 일본의 겐수이킨(원자·수소폭탄금지일본국민회)의 활동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 8월 9일 금요일

- 강연 : 야스쿠니문제와 전쟁책임(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
 - 야스쿠니 문제는 무엇인가, 전쟁책임(도쿄재판), 역사문제의 해결이란 무엇인가
- 강연 : 답사장소 해설(야스쿠니 유슈관, 해신기념관, WAM 등)
 - 전쟁에 대한 생각, 실상, 가해·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봄. 학습지 준비
 - 야스쿠니 유슈관 답사에 대해서는 현재 한중일 협의 중임.

◎ 8월 10일 토요일

- 한중일 공동수업 : 한국전쟁과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 일본 : 일본 평화헌법의 성립과 전개
 - 한, 중 : 교안 미정 / 3국 교사 교안 교환 예정
- 조별 시티투어(5개 코스)
 - 도쿄자미(모스크)→신오오쿠보 코리아타운→고려박물관(신오오쿠보)
 - 아사쿠사→스카이트리 방면 센소지→도쿄 대공습 전재 희생자 추모비(고토토이바시), 스미다구 관동대지진 추모비 등
 - 야메야요코초→우에노공원(왕인상)일대→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불 등
 - 진보초 고서점가→아키하바라 2.8독립선언 기념자료실(재일본 한국 YMCA) 등
 - 도쿄 대공습 기념관→료코쿠→아키하바라 등

◎ 8월 12일 월요일

- 한국 측 답사 : 메이지 신궁 및 3.1운동 관련 유적지 등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 기대효과

- 한중일 청소년들이 역사 갈등의 원인과 현상을 인식하여 서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자국 중심의 역사관을 넘어 평화 공존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 한중일 교사들에게 동아시아 역사의 이해도를 높여 공동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장기적으로는 역사교육과 평화교육을 심화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스스로 아시아 평화를 생각하고 존중하며 자기 삶에서 자신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다.

VI 행정 사항

1. 참가신청서 제출

- 기한: 2019.4.30.(화) ~ 5.11.(토) 오전 11시까지
- 방법: (사)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홈페이지(www.ilovehistory.or.kr)로 신청
- 대상: 14세~19세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 선정: 한국 참가자 정원 35명 선정 예정 (서울지역 청소년 18명 선정)

2. 참가비 납부

- 청소년 : 1,100,000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참가비 일부 지원)
- 성인(인솔교사 등) : 1,270,000원
- * 일본 ANA 항공 이용 예정, 항공비, 체재비, 여행자 보험 일체 포함

3. 문의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메일 : japantext@hanmail.net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사무국 : ☎ 02-720-4637, 총무부장 이예슬

※ 참고: 캠프 연혁

구분	개최년도	개최지	주제
1회	2002. 8	대한민국 서울	한국과 일본, 새로운 하나 됨 : 한일 청소년의 힘으로!
2회	2003. 7	일본 관서	전쟁 없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3회	2004. 8	대한민국 안양	1945.8.15-동아시아 역사인식의 공유
4회	2005. 8	중국 베이징	광복 60주년-동아시아를 하나로! 평화로! 미래로!
5회	2006. 8	일본 오키나와	오키나와로부터 아시아의 평화로!
6회	2007. 8	대한민국 제주	전후 역사와 동아시아 평화 만들기
7회	2008. 8	중국 난징	난징에서 생각하는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
8회			신종인플루엔자로 취소
9회	2010. 8	일본 치바	동아시아 100년, 평화와 교류의 21세기를!
10회	2011. 8	대한민국 인천	교류의 도시 인천에서 마주하는 평화
11회	2012. 7	중국 대련	다양성이 공존하는 대련에서 생각하는 역사와 미래
12회	2013. 8	일본 교토	일본의 고도·도쿄에서 교류, 평화 화해를 젊은이의 손으로
13회	2014. 8	대한민국 충남	동아시아, 1894 갈등을 넘어 2014 평화를 말하다
14회	2015. 8	중국 상해	청소년과 동아시아의 미래 : 전후 70년의 사고
15회	2016. 8	일본 홋카이도	홋카이도의 역사와 문화에서 배우로 미래를 만들자!
16회	2017. 7	대한민국 서울	서울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17회	2018. 7	중국 장춘	장춘에서 생각하는 역사와 평화 (안)
18회	2019. 8	일본 도쿄	동아시아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자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97호, 2018. 1. 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 시민”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이 마땅히 학습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민들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

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과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민들의 자치 활동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2.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3.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4.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직원, 학부모 연수
5. 그 밖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3】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17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

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9.3.28.]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의 해지
8.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

사한 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첨 4】

민간 위탁 성과 보고서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1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 한·중·일 학생 및 교사 국제교류사업 운영을 통한 갈등해결 및 역사교육 발전 도모
- 동아시아 평화로운 미래 모색과 그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함양 및 세계시민 육성

○ 추진 배경

- (2017.3.9.) 서울시교육청-(사)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이하 ‘아평’)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 내용: 동아시아역사체험캠프 공동 기획 및 운영, 자료 공동개발 및 협력 등

※ 참고: (사)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연도	활동내용
2001	‘일본 역사교과서 개악저지 운동본부’결성(55개 단체) 일본역사교과서개악저지운동 진행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로 창립(86개 단체)
2002~	일본 후쇼샤교과서 불채택 운동 진행
2005	한중일 공동교재 집필‘미래를 여는 역사’ 발간
2002~현재	한중일 청소년역사캠프, 한중일 평화포럼, 한중일 공동수업 등 진행

※ 참고: 캠프 연혁

구분	개최년도	개최지	주제
1회	2002. 8	대한민국 서울	한국과 일본, 새로운 하나 됨 : 한일 청소년의 힘으로!
2회	2003. 7	일본 관서	전쟁 없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3회	2004. 8	대한민국 안양	1945.8.15-동아시아 역사인식의 공유
4회	2005. 8	중국 베이징	광복 60주년-동아시아를 하나로! 평화로! 미래로!
5회	2006. 8	일본 오키나와	오키나와로부터 아시아의 평화로!
6회	2007. 8	대한민국 제주	전후 역사와 동아시아 평화 만들기
7회	2008. 8	중국 난징	난징에서 생각하는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
8회			신종인플루엔자로 취소
9회	2010. 8	일본 치바	동아시아 100년, 평화와 교류의 21세기를!
10회	2011. 8	대한민국 인천	교류의 도시 인천에서 마주하는 평화
11회	2012. 7	중국 대련	다양성이 공존하는 대련에서 생각하는 역사와 미래
12회	2013. 8	일본 교토	일본의 고도·도쿄에서 교류, 평화·화해를 젊은이의 손으로
13회	2014. 8	대한민국 충남	동아시아, 1894 갈등을 넘어 2014 평화를 말하다
14회	2015. 8	중국 상해	청소년과 동아시아의 미래 : 전후 70년의 사고
15회	2016. 8	일본 홋카이도	홋카이도의 역사와 문화에서 배우로 미래를 만들자!

16회	2017. 7	대한민국 서울	서울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17회	2018. 7	중국 장춘	장춘에서 생각하는 역사와 평화 (안)
18회	2019. 8	일본 도쿄	동아시아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자

2 추진 현황 및 실적

○ 추진 현황(2017~현재)

- 주최

【한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일본】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실행위원회

【중국】 사회과학근현대사연구소, 중국 사회과학문헌출판사

- 참여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장소	대한민국 서울	중국 장춘	일본 도쿄
주제	서울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장춘에서 생각하는 역사와 평화	동아시아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자
기간	2017.7.24.~7.29.(5박6일)	2018.7.29.~8.3.(5박6일)	2019.8.7.~8.12.(5박6일)
참가자 (전체)	한중일 학생 87명, 인솔자 65명	한중일 학생 104명, 인솔자 64명	한중일 학생 124명, 인솔자 65명
참가자 (서울)	학생 20명, 교사 3명	학생 14명, 교사 4명	학생 23명, 교사 3명

- 활동 내용: 한중일 공동수업, 역사유적지 답사, 조별 토론 및 발표, 공동체육대회 등

- 활동 사진(2018)

발대식	개회식 공연(중국 측)	조별 토론활동
		
한중일 공동수업	체험답사	공동 체육대회
		

○ 추진 실적

- 한·중·일 청소년 간 공동의 역사 체험답사와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와 평화감수성 증진

- 한·중·일 공동수업으로 교사네트워크 구축, 수업 및 교육프로그램 공유(동아시아역사인식 공유)

- 캠프 참여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이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캠프 성과 지속과 활성화에 기여

<p>▶ 활동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에 참여한 일본 청소년들이 “미안하다” 고 울며 중국과 한국에 사과하는 사례 있음 - 캠프를 경험한 후 일본어/중국어를 대학 전공 선택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참여 사례 많음 - 특히, 일본 시민과 교사들이 한중일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지속되어 옴

○ 예산 집행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예산 금액	금40,000천원	금21,868천원	금40,000천원
예산 항목	민간위탁(320)	운영비(21013)	민간위탁(320)
집행 현황	숙박비, 교통비, 식비, 자료집제작비, 일반수용비, 통역비 등 집행 (서울 학생 1인당 참가비 230,000원씩 지원)	항공료,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차량대절비, 참가비, 일반수용비 학생,인솔자,교육청관계자 18명 지원 (1인당 약 1,200천원)	1인당 참가비 1,100,000원 중 일부금액 지원 예정 (1인당 약 780천원 지원 예정)
비고	참가비 및 행사진행비 지원	전년도 2018 예산계획 시 민간위탁 불가로 인해 교육청운영비로 설정하여 집행함 - 서울학생 중 일부를 선정하여 참가비 전액 지원	참가비 일부 지원 예정

담당부서	민주시민교육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팀장 손동빈(3999-542) 담당자 한미정(6973-9832)
------	---